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[6574]/보험급여팀장 백영기[6581]/팀원 박수연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4082호

시행일자 2018. 3. 30.

수 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
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68호(2018.3.29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조의2 및 제14조 에 의한 「요양급여대상·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고시 제2015-162호, 2015.9.21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발령한바, 이를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사항은 우리협회 홈페이지(상담실-무료보험상담실-보험고시)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-법령-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[주요내용]

- 급여대상확인 및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시 전문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개정
- 급여대상확인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인에게 반드시 사유를 통보하게 하고, 처리기간 미산입 기간 근거는 명확화
- 급여대상확인 중 항목(또는 상대가치점수) 신설 등이 필요할 경우 심평원은 이를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하고,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 또는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

[시행일]

2018.4.1.(일)

붙임 : 복지부 고시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